

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

「오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오산시의회의 규칙」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4년 4월 16일

오산시의회의장

오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전예슬 의원 발의)

1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클럽에 보조금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클럽활동 활성화 및 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접근성 향상으로 관내 체육활동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-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 (안 제3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의견제출

- 제출기일 : 2024년 4월 22일까지
-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오산시의회 홈페이지 등
- 제출서식 :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
(오산시의회 홈페이지>알림마당>입법예고>공지)
-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연락처번호, 의견
- 제출기관 : 오산시의회(전문위원실)
 - 우편번호 : 18132
 - 주 소 : 오산시 성호대로 141(오산동, 오산시의회)
 - 전 화 : 031)8036-8033
 - 전자메일 : aragu@korea.kr

오산시 조례 제 호

오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오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지원할 수 있다”를 “지원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지원 및 범위) ① 오산시장 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 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(이 하 “보조금” 이라 한다)으로 <u>지</u> <u>원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3조(지원 및 범위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지</u> <u>원하여야 한다.</u></p>